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21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 ’24.12.)’에 따라 대형 건설 현장 등에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한 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공사현장에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도서·벽지지역, 교통체증지역 등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로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 나. 현장배치플랜트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소요량의 50%로 제한하던 기준을 삭제함(안 제43조제2항 후단 및 제44조 삭제)
- 다. 현장배치플랜트(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를 설치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시행하는 인근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레미콘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43조제3항)

3. 의견제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3.20.(목)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찬·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9, 팩스 044-201-5553)
- 전자우편: nasarang@korea.kr